

【 8 】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

제출년월일 : 1993. 5. 7.

제 출 자 : 양주군수

제안이유

- 행정협의회 규약중 일부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아 협의회 운영의 효율을 기대할 수 없고, 광역행정 수요중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판단 또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그 처리가 지난할 실정이므로
- 행정협의회 규약중 불합리한 부분은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
- 광역행정협의회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공공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두도록 관계규정을 신설코자 함.

주요골자

- 가. 협의회 안건의 합의는 "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"를 "관련 자치단체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"로 개정 (안 제6조 2항)
- 나.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 (신설)
- 다.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 (신설)
- 라.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(신설)

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8조
 - 행정협의회 의 규약 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

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

의정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6 조 제2항중 “참석위원 전원”을 “관련 자치단체위원 전원”으로 한다.

제 1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11 조 2 (자문위원)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
들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은 관련 공공단체 및 국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중에서 협의
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
③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
수 있으며, 지급단가는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9 】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

제출년월일 : 1993. 5. 7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의 업무를 공동으로 협의.처리 하므
로써 권역내 균형있는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.

주요골자

- 가. 협의회 회의 기능 (안 제5조)
- 나. 협의방법 (안 제6조)
- 다. 비협의 사항 조정 요청 (안 제12조)
- 라. 자문위원 구성 (안 제13조)
- 마. 실무협의회 (안 제14조)